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익사업의 범위에 ‘수소 관련 사업’ 추가 》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22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제221812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참고사항	2
4. 검토의견	3
가. 공익사업의 범위에 ‘수소 관련 사업’ 추가	3

I.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제221812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4. 6.

다. 회 부 일 : 2026. 4.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및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부지매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노선 우회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상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하

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20)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안번호 제2207605호) 및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검토의견

가. 공익사업의 범위에 ‘수소 관련 사업’ 추가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1.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1) ~ (19) (생략) <u><신설></u>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1. (현행과 같음) (1) ~ (19) (현행과 같음) (20)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u>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u>하거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u>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u>하는 공사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4조¹⁾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면서, 제8호에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도 토지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 7. (중략)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또한, 현행법 제4조의2²⁾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한편, ‘사업인정’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현행법 제20조³⁾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이나 수용 필요성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종합적 검토 등을 거쳐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별표]는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116개의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이 중 [별표] 제1호에 따른 19개의 공익사업에 관해서는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4) 참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유형

개정안은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수소 관련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해당 수소 관련 사업은 ①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제2조 제4호가목5)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②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7조6)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함.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⁷⁾」은 수소 및 수소화합물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 공급계획, 수급예측, 비

5)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이종배·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60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저장 또는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관 등을 제외한 것(이하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4.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자: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업을 하는 자

6)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257호)

제7조(사업시행자)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소도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7)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수소·수소화합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 등 수급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수소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이고,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⁸⁾」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와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인바, 두 건의 제정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수소 관련 사업기반 구축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에 따라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를 전제로 하는바,

해당 공사에 필요한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부지매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만일 부지확보에 실패하여 배관노선을 우회할 경우 공사비 증가 및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8)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소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수소 관련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4조제2호⁹⁾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가스’ 등에 관한 사업은 토지를 취득·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소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은 수소 및 수소화합물의 정의상¹⁰⁾ ‘가스’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¹¹⁾, 수소 관련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확히 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10)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란 발전용, 수송용, 산업용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부생수소, 추출수소, 수전해 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액화, 고체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수소화합물”이란 암모니아 등 수소와 다른 물질이 합성된 화합물 중 수소의 운송, 저장 및 발전 연료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1) 예컨대 수소의 운송 및 저장을 목적으로 기체 상태의 화합물을 압축하거나 냉각하여 액체 상태로 변형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및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두 제정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수소 관련 사업은 현행법 제4조제2호의 ‘가스’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현행법 규정으로도 사업인정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가스터빈¹²⁾”을 정의하고 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¹³⁾」 또한 수소를 사용신고 대상인 고압가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는 ‘기체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므로, 관계 법령의 규정과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수소는 현행법 제4조제2호의 ‘가스’에 포함된다는 의견임.

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10., 2025. 10. 1.>

10. “수소가스터빈”이란 수소 또는 수소를 포함하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관계기관	의견
기후에너지 환경부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는 별표 제2호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의 성격을 고려할 때 도로공사, 수도사업, 공공하수도 설치 등 별표 제2호에 규정된 사업과 유사하며,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은 타법상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81

참 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유형

자료 : 국토교통부

◆ 토지보상법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 절차를 통해 토지 등의 사용 및 수용권 부여
 *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토지보상법 제20조)

구분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개별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및 별표)	
		제1호 사업인정 사업(19개)	제2호 사업인정의제사업(97개)
대상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사업 - 국방·군사, 철도·도로 등 공공사업, 청사·공장 등 공공용 시설사업, 주택 및 택지·산단 조성사업 등 <u>사업유형 열거</u>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사업 - 토지보상법 개정('15.12월)을 통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 가능 사업을 토지보상법 <u>별표에 열거</u>	
	<사례> (1호) 국방대 이전 (2호) 비관리청도로공사 (3호) 공장, 정원, 갯벌, 지역특구 (4호) 우제류복원센터연구소 (5호) 행복주택 등	<사례>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응급조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	<사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인정권자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승인권자 (해당 기관장, 시·도지사 등)
인정절차	사업인정 신청(사업시행자) → 공익사업 대상여부 검토(국토부) → 의견청취 및 중토위 협의(국토부) → 사업인정 고시(국토부)	사업인정 신청(사업시행자) → 의견청취 및 중토위 협의(국토부) → 사업인정 고시(국토부)	사업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의견청취 및 중토위 협의(인·허가·승인권자) →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 고시(인·허가·승인권자)
개정연혁	수목원 조성 사업 추가('05년),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08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14년)	'20년 이후 별표 신설	
		수목원 조성 사업에 정원 조성 사업 추가('24.1)	해양클러스터법('21.1.) 도시재생법, 빈집법('21.7.) 수자원조사법('21.4.)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법('23.10.) 가덕도신공항법('24.9.) TK통합신공항특별법('25.8.) 광역교통법('25.12.)
대상사업 추가요건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 법 제4조의2제3항 신설로 사업인정의제사업에 대해 5년마다 재검토 후 폐지·변경 또는 유지 조치 필요('21.10)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개별 법령 내용(사업내용 구체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공필요 사업에 한해 수용할 수 있도록 제한,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요건 강화 등)
특징	①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공공성 및 수용의 필요성 부족시 사업인정 거부(국토부장관) ② 사업인정기간 약 6개월 소요	① 토지보상법 별표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수용의 필요성 부족시 사업인정 거부(국토부장관) ② 사업인정기간 약 6개월 소요	①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승인만으로 토지 수용 가능(사업인정 거부 없이 수용권 남발 가능성 존재) ② 사업인정기간 단축(6개월→1개월)